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5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과 최미애 과장(02-509-7230), 임완빈 연구관(02-509-7233)

불법, 불량 계량기 근절을 위한 법안 국회 통과

- 과징금제도 도입, 소비자 자율 감시 확대로 공정한 거래문화를 구현 -
- 개수,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도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성시헌)은 불법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, 믿고 거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**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전부 개정을 추진해 지난 4월 말 국회를 통과**했다고 밝혔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주유기, 전력량계와 같은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해왔으나

○ 불법조작에 따른 벌금이 이익금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재발하고, 소프트웨어 변조와 조작 행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.

* '주유기 프로그램 조작으로 80억대 부당이득' ('14. 3. 12) 등 계량기 조작 사례[참고 2]

○ 이번 개정안에서는 **과징금 제도를 도입해** 불법 이익금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**위반업소 명단을 공개**할 수 있도록 해 계량기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.

□ 또한 개정된 법안은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자치회 등을 **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**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,

○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**포상금을 지급**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.

□ 한편 현행 법률은 **길이**(두루마리 화장지 등), **질량**(쌀, 과자류 등), **부피**(음료수, 주류 등)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하였으나,

○ 물티슈, 기저귀,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표시된 양과 실제 양이 다르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,

○ 이번 법률개정으로 정량표시 상품을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**개수,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** 등으로 확대했다.

* 정량표시상품: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
* 정량표시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[참고 3]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('15. 1. 예정)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,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.

* 하위법령 마련 : 시행령, 시행규칙 및 운영요령(2건 개정, 9건 제정)

< 참고. 1 > :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< 참고. 2 > : 계량기 조작 사례
< 참고. 3 > : 정량표시 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연구관(☎ 02-509-72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

□ 입법추진 배경

○ 급속한 기술발전, 관리대상 계량기의 지속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로는 계량기의 체계적 관리에 한계

-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등 계량기의 **자율적 관리를 확대**하고, 리콜제도·소비자감시원제도 등을 도입하여 **시장감독을 강화**

□ 주요 개정 내용

○ **효율적·실효적 계량기 관리체계 구축**

- 제조사 등이 제조결함 사실을 의무 신고토록 하고, 결함내용에 따라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제22조)
- 제작업자 및 사용자 스스로 계량기를 검정·정기검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관리 확대(제32조~제33조)
- 불법계량기의 감시·관리를 확대하기 위한 소비자감시원제도 운영(제41조)

○ **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관리대상 품목 조정 및 처벌기준 강화**

- 정량표시상품(現 26종)을 미용화장지, 벽지 등 개수, 면적으로 표시되는 생활밀착형제품 포함(제2조제3호)
- 상거래 및 증명용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을 통해 측정오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(제39조~제40조)
- 부정 계량행위의 불법 이익금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(2억원 이하)하고, 위반자 명단 공개 규정 신설(제51조, 제55조)

○ **계량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**

- 계량분야의 창업지원, 인력양성, 해외진출 지원 등 계량산업의 육성(제57조~제60조)
- 검사이력 관리, 검사대상 통보 등 계량정보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제61조~제62조)

참고2 계량기 조작사례

연도	계량기별 조작사례		출처
2013년	수도미터	사용자의 계량기 밸브 조작으로 인한 요금 과다 청구	조선일보 외 4건
		수도계량기 설치 기준 위반(역설치) 하여 사용량 기준 조작 및 요금 조작	연합뉴스
	주유기	주유기의 중앙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양 조절	연합뉴스 외 1건
2012년	가스미터	가스미터 봉인 파손 후 계량기 조작	노컷뉴스 외 2건
	주유기	주유기의 전자기판 조작을 통한 양 조절	YTN 외 2건
		주유기의 메인보드 조작을 통한 양 조절	YTN 외 5건
		주유기 조작 프로그램을 통한 양 조절	SBS
	전력량계	전력량계 측면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바늘을 넣어 원판 회전을 막음	KSB
	적산열량계	공동주택 난방 계량기 조작방지를 위한 관련 설치 기준 개정	MBC 외 4건
2011년	수도미터	목욕탕 등 상수도 계량기 조작	YTN
	주유기	리모컨 조작을 통한 주유 양 조절	SBS
	적산열량계	계량기 건전지 불법 제거하여 계량 조작(신도시 아파트 100세대 발견)	국회 국정감사
2010년	수도미터	수도미터 검침 바늘 조작을 양 조절	서울경제 외 1건
		수도미터 기어 파손을 통한 요금 감면 효과	YTN 외 3건
	전력량계	전자식전력량계 외함에 구멍을 뚫고 전류측정소자 훼손	부산일보

참고3 '정량 부족'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품목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합계
물품	식료품&기호품	140	184	132	124	**580**
	식생활기기	1	2	2	3	**8**
	주방용품·설비	1	2	1	1	**5**
	가구	3	0	2	0	**5**
	가사용품	13	14	15	6	**48**
	광열.수도	117	93	72	47	**3**
	의류,섬유, 신변용품	47	55	49	49	**2**
	보건.위생용품	23	29	28	17	**9**
	차량 및 승용물	74	73	73	78	**298**
	문화용품	4	0	2	1	**7**
	정보통신기기	5	3	4	3	**15**
	스포츠.레져.취미용품	1	2	1	3	**7**
	토지.건물 및 설비	18	16	16	8	**58**
	농.수.축산용품	3	3	3	6	**15**
	기계류 기타물품	9	3	6	4	**22**
합계	소 계	**459**	**479**	**406**	**350**	**1,694**

※ 소비자보호원 상담 사례('10~'13년)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